

2021학년도 2학기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

평생교육실습 과목 학습자 안내 사항

※ 아래 사항에 대하여 참고하신 후, 신중하게 수강여부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.

1. 모집인원: 선착순 총 40명

2. 지원 자격: 선수과목 이수 완료자

- 평생교육실습: 필수 4과목 이상 이수 완료한 학습자

구 분		과 목 명
필수		평생교육론, 평생교육방법론, 평생교육경영론,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(4주간)
선택	실천영역	아동교육론, 청소년교육론, 여성교육론, 노인교육론, 시민교육론, 문자해독교육론, 특수교육론, 성인학습 및 상담(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)
	방법영역	교육사회학, 교육공학, 교육복지론, 지역사회교육론, 문화예술교육론, 인적자원개발론, 직업·진로설계, 원격(이러닝, 사이버)교육론, 기업교육론, 환경교육론, 교수설계, 교육조사방법론, 상담심리학(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)

3. 수업 일정표

강좌명	시간	교육기간/일자	실습 가능 지역	모집인원
평생교육실습	토 13:00-15:40	교육기간: 9/4-12/18 9/4, 9/11, 10/30, 12/11, 12/18	대구, 경북, 경남	40명

※ 출석을 80% 이하(3시간 수업 초과 결석 시), 성적 F 처리됨.
※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될 수 있음(개강 및 종강 수업은 대면수업 진행)

4. 제출 서류

가. 입학원서 1부(증명사진 부착): 첨부파일 다운로드

나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 1부: 첨부파일 다운로드

다.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본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) 1부

라. 최종학력 졸업증명서(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는 **학사 졸업증명서**) 1부

※ 대학 중퇴자는 **제적증명서 원본** 1부 제출

※ 검정고시 졸업자는 **검정고시 합격증 원본** 1부 제출

마. 선수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확인서(이수증명서) 1부

※ 증명서는 기관직인 날인 확인 후에 제출

※ 수강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8월 31일까지 선수과목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, 실습과목 개강 후 성적증명서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. (제출 시, 선수과목 중 F 과목이 있을 경우는 실습수업 수강이 취소될 수 있음)

※ 모든 증빙서류 제출은 3개월 이내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,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는 탈락 처리 하오니 제출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
5. 학습비 납부 및 등록기간 안내

■ 입학원서 제출 → 수강등록 안내(합격자에 한함) → 학습비 입금 → 신청과목 수강

■ 등록기간: 2021. 8. 30.(월) 17:00까지 입금 완료

■ 학습비: 300,000원(실습기관의 실습지도비는 별도)

■ 등록계좌: 207-04-000318-9 대구은행 / 예금주: 대구대학교

※ 학습비 납부 시, 반드시 학습자 본인명으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우편 접수자는 접수등록 완료 후, 개별문자 안내에 따라 학습비를 송금하시기 바랍니다.

6. 평생교육실습 기관선정 및 안내사항

- 실습기관 선정은 학습자 본인이 직접 선정해야 하며, 실습기관의 실습지도비는 본인부담입니다.
※ 개강 전, 실습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행정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코로나19로 인해 실습시간 160시간 중 50%이내의 범위에서 원격지도를 통한 비대면 실습 운영이 가능합니다.
- 실습 기간 및 시간 (**※ 본원에서 정한 실습기간 외에 실습은 불가능함**)
 - 실습 기간: 2021년 9월 5일(일요일) ~ 2021년 12월 5일(일요일)까지
 - 실습 시간: 총 160시간 (20일 이상)
 - 2021년 9월 6일(월)부터 실습할 수강생은 실습신청서를 9월 1일(수)까지 제출해야만 실습이 가능합니다.
- 실습기관 선정기준
 - 평생교육실습: 평생교육사 자격관리(<https://ledu.nile.or.kr/>)홈페이지 자료실 ‘실습관련자료’ 참조

구분	기관유형		예 시	
평생교육법	①유형	국가평생교육진흥원	국가평생교육진흥원	
		시·도 평생교육진흥원	서울평생교육진흥원, 부산평생교육진흥원, 대구평생교육진흥원, 인천평생교육진흥원, 광주평생교육진흥원, 대전평생교육진흥원, 울산평생교육진흥원, 세종평생교육진흥원, 경기평생교육진흥원, 강원평생교육진흥원, 충북평생교육진흥원, 충남평생교육진흥원, 전북평생교육진흥원, 전남평생교육진흥원, 경북평생교육진흥원, 경남평생교육진흥원, 제주평생교육진흥원	
		시·군·구평생학습관 (읍·면·동평생학습센터)	평생학습관, 평생학습센터(행복학습센터), 공공도서관, 문화원, 연수원·수련원, 박물관, 복지관 등	
	②유형	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	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·지정 기관	
		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기관	당해연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기관	
	③유형	평생학습도시	시·군·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	
국가·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		광역시도청 / 시·군구청 / 시도교육청 / 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		
④유형	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	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, 학교평생교육사업 (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, 방과후학교 사업 등) 수행		
⑤유형	평생교육시설 신고·인가 기관	유·초·중·대학부설 / 학교형태 / 사내대학형태 / 원격대학형태 / 사업장부설 / 시민사회단체부설 / 언론기관부설 / 지식·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		
그 밖의 다른 법령	⑥유형	평생직업교육학원	학원설립 운영등록증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등록 여부확인 (학교교과 교습학원 형태는 인정불가)	
	⑦유형	기관형 교육기관	주민자치기관	시·군·구민회관, 주민자치센터 등
			문화시설기관	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지방문화원 등
			아동관련시설	아동직업훈련시설, 아동복지관, 지역아동(정보)센터 등
			여성관련시설	여성인력개발센터, 여성(복지, 문화)회관 등
			청소년관련시설	청소년지원센터, 청소년수련시설, 청소년문화의집 등
			노인관련시설	노인교실, 노인복지(회)관 등
			장애인관련시설	장애유형별 생활시설, 장애인복지관 등
			다문화가족관련시설	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
	⑧유형	훈련·연수형 교육기관	직업훈련기관	공공직업훈련시설, 지정직업훈련기관 등
			연수기관	공무원연수기관, 일반연수기관 등
	⑨유형	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	비영리민간단체	전국문해·성인기초교육협의회, 한국평생교육학회 등
			비영리 사(재)단법인	한국평생교육사협회, 한국문해교육협회 등
청소년단체			한국청소년연맹, 청소년단체협의회 등	
여성단체			여성회, 여성단체협의회 등	
노인단체			대한노인회, 전국노인평생교육, 단체연합회 등	
시민단체			NGO, YMCA, YWCA, 환경운동연합 등	
기 타		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		

- 실습 가능지역: 대구, 경북, 경남 (그 외의 지역은 본원에 문의 후 신청 바람)

■ **실습 시, 유의 사항**

- 실습 가능지역은 본원(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)에서 제한한 것이므로,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- 본인 근무지 내 실습이 가능함. (※본원의 행정실로 알려주시기 바람)
- 수업일(세미나수업)에 현장실습은 불가능함(비대면 수업일 경우에도 불가능함)
- 주말 실습생은 실습지도자가 주말에 근무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바람
- 선착순이더라도 본원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불일치 시, 선발하지 않으며 선발 이후에도 실습기관 지역 제한 등 자격 탈락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리엔테이션 시, 자료 배부함

7. 오리엔테이션 자료 및 기타 문서 서식과 관련하여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-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주소: <http://lifelong.daegu.ac.kr>
-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→ 학점은행제 → 서식자료실 참조

8. 실습과목만 수강하시는 학습자분들께서는 학점인정 신청 및 자격증 신청 업무를 따로 도와드리지 않으니 개별적으로 기간 및 방법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..

9. 본원의 2021학년도 2학기 개강일은 2021년 9월 4일(토)이며, 강의실(대면) 수업 5회 진행됩니다.

※ 5회 수업출석이 원칙이며, 2회 결석할 경우 성적 F 처리되어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합니다.

10. 입학 원서에 교육비 면제자(국가유공자 등) 체크란이 있습니다. 교육비 면제 대상자는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. (※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)

11. 학습비(수업료) 환불은 개강 전 100% 환불 가능하며 개강 후에는 평가인증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[별표]에 의거하여 환불 됩니다.

[별표] 학습비 반환 기준(제4조제2항 관련)

반환 사유	반환 사유 발생 시점	반환 금액
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		과오납된 금액 전액
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	수업 시작일 전일까지	학습비 전액
	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	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
	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	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
	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	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	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	반환하지 않음

- 수업료 환불은 실습 시작과 관계없이 수업 시작 후부터 적용됩니다.
- 개강 전까지 실습기관을 정하지 못하신 분께서는 이 점 참조하여 수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